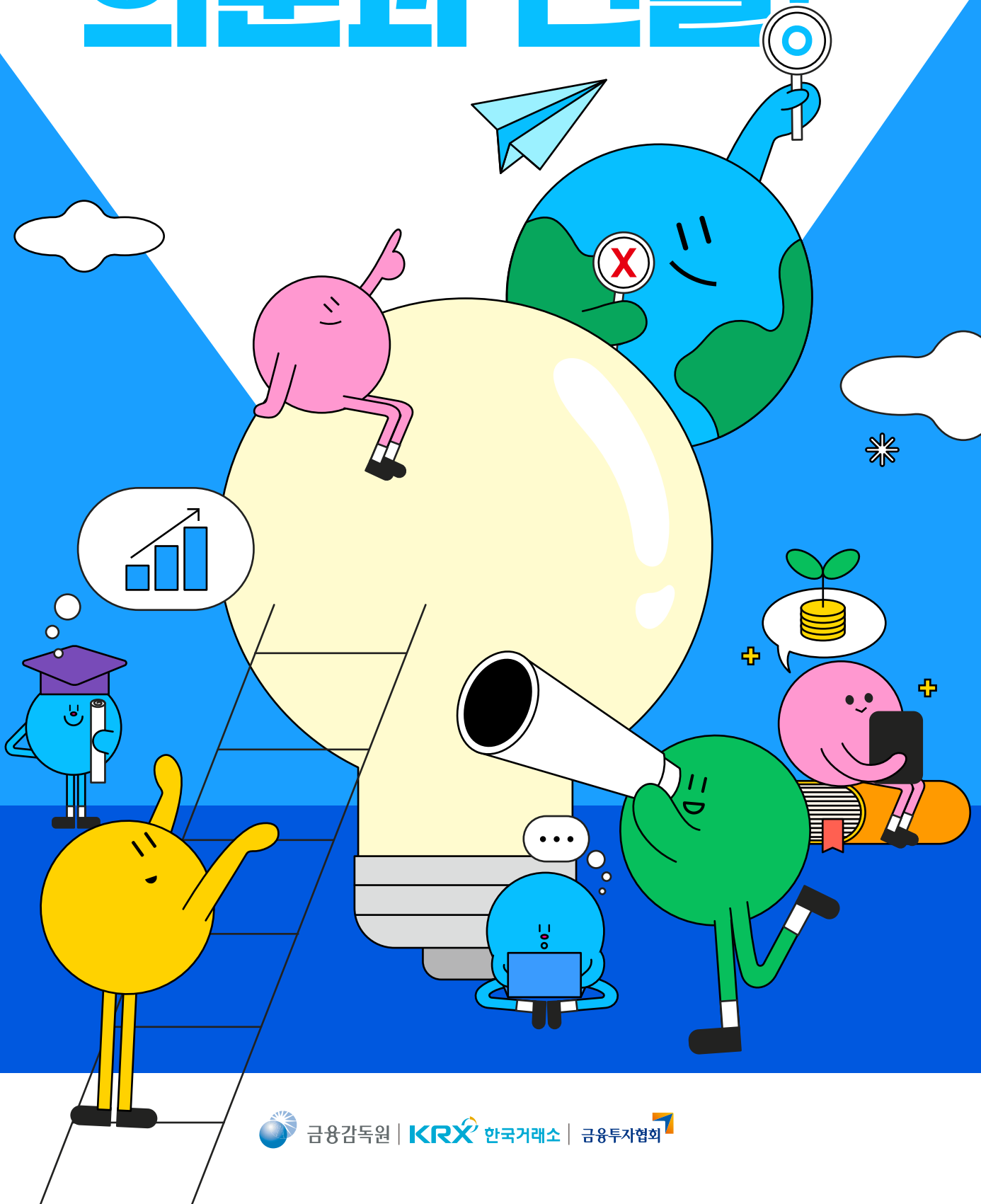




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과 진심!



금융감독원



한국거래소

금융투자협회



Q.1

Q NSDS란 무엇이며

어떻게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·통제하는 것인가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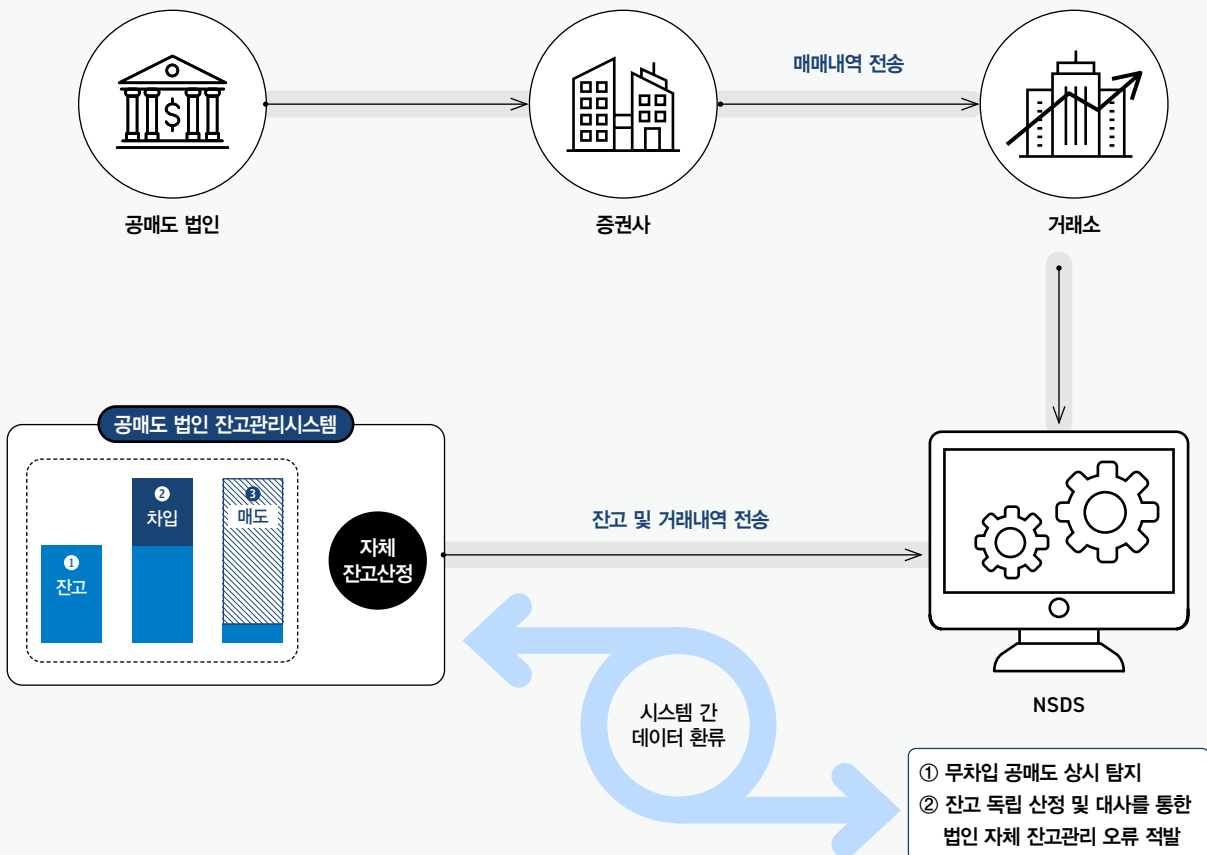
A NSDS*는 무차입 공매도 예방·통제를 위해
글로벌 민관협력체계의 일환으로 마련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을 의미합니다.

* Naked Short-selling Detecting System

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*으로부터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잔고 및
거래내역을 전송 받아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탐지하며,

* 공매도 잔고 0.01% 또는 10억원 이상 등

잔고를 독립적으로 산출하고 법인 잔고와의 비교·대사를 통해 개별 법인 잔고의 오류를 적발하고
데이터 환류체계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탐지 및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통합 전산 시스템입니다.



Q.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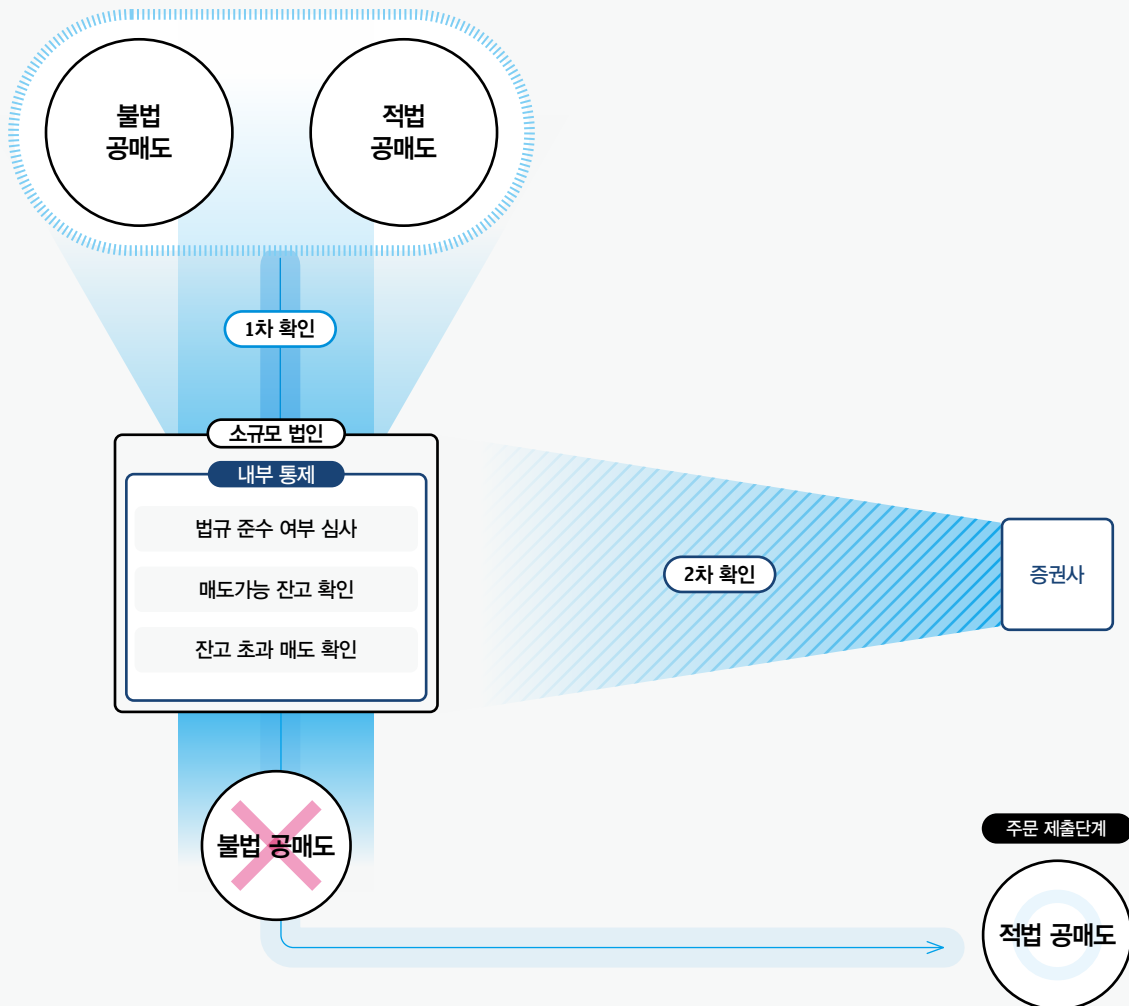
Q NSDS 등 공매도 전산화는 대규모 법인에만 적용되어, 소규모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?

A 그렇지 않습니다.

소규모 법인*을 포함한 모든 법인은 공매도를 하기 전 반드시 법규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매도가능 잔고를 확인하며 잔고 초과 매도를 차단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. (자본시장법 §180-6① 등)

* 공매도 잔고 0.01% 및 10억원 미만

또한,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(수탁 증권사)도 내부통제가 제대로 갖추어 졌는지 재차 확인 하는 등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이중·삼중의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. (자본시장법 §180-6② 등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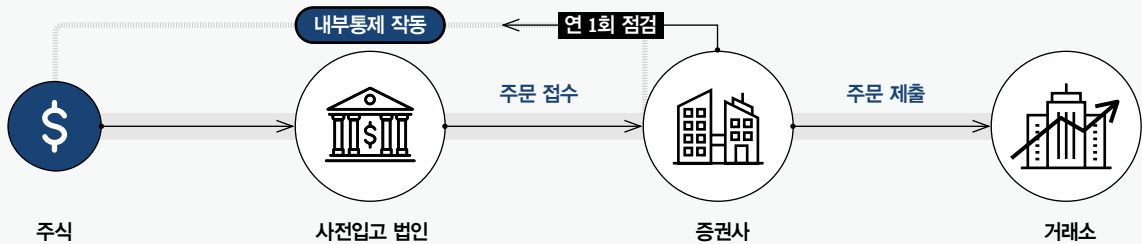
Q.3

Q 주식을 미리 계좌에 입고한 후에 공매도를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인지?

A 그렇지 않습니다.

주식을 미리 계좌에 입고(사전입고)한 후 공매도를 제출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.

또한 무차입 공매도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, 사전입고 후 공매도 법인에 대해서도 내부통제를 의무화하는 한편, 수탁증권사가 매년 점검토록 하였습니다. (자본시장법 §180-6①·②, 동법 시행령 §208-7③ 등)



Q.4

Q 공매도 목적 대차의 상환기간을 90일로 한정하지 않고, 최장 12개월까지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

A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은 개인 및 기관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규제입니다.

* 개인 또한 대주 상환기간 연장 시 최장 12개월까지 가능

상환기간 제한은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한 층 더 강화된 규제로 시장의 유동성과 공매도 거래의 합리성을 위하여 최장 12개월까지 연장을 허용하는 규제입니다.

| 구분 | 미국 | 영국 | 홍콩 | 싱가포르 | 대만 |
|--------------|----|----|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증권대차 상환기간 제한 | 없음 | 없음 | 없음 | 없음 | 최장 18개월 (6월 x 3회) |

Q.5

Q 무차입 공매도를 한 후, 주문 당일에 주식을 사후차입 하면 NSDS로 적발할 수 없다?

A 아닙니다.

NSDS는 단순히 주문 당일의 잔고 정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, 거래 내역을 순차적으로 분석하여 각 매도 거래별로 잔고 초과여부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공매도 후 주식을 차입하는 경우에도 NSDS를 통해 적발 가능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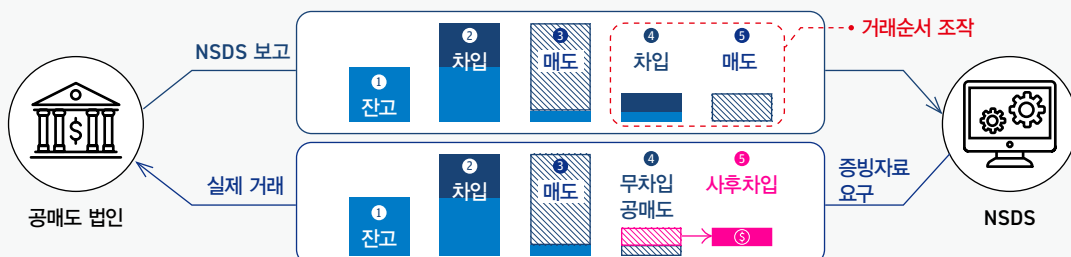


Q.6

Q 공매도 법인의 대차거래가 수기로 이뤄지는 경우, 매도가능잔고를 조작할 수 있다?

A 잔고 조작 행위는 적발 가능합니다.

공매도 법인의 잔고관리는 독립된 부서의 견제·감시를 통한 내부통제 및 NSDS의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요구 등 이중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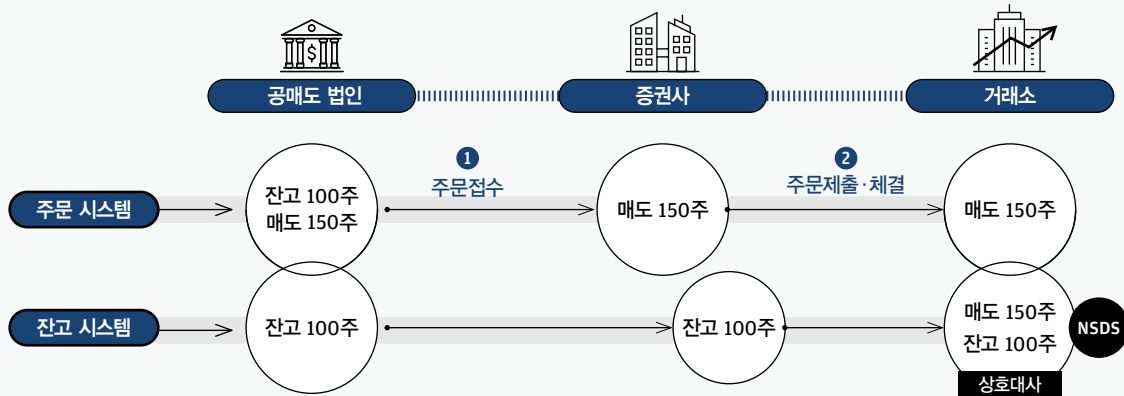
Q.7

Q 공매도 거래법인과 증권사가 협력하여 매매거래 정보를 조작하면 NSDS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?

A 아닙니다.

공매도 거래법인이 증권사를 통해 제출한 장내거래 정보는 거래소에 접수된 후 거래원장에 별도 기록·보관되며 이를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

또한,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할 경우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여 조작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.



Q.8

Q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1억원에 불과한데,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?

A 그렇지 않습니다.

삼중의 제재가 적용됩니다.

- ①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을 경우 1억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.
- ② 무차입 공매도 발생시 공매도 주문 금액 기준으로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며,
- ③ 고의로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